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93호 2012. 6. 4.(월)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45호(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4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47호(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4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8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4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0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50호(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51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19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52호(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25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5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54호(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37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55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98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44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30호(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46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45호(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8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4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 60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47호(도로명주소 고시) 62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48호(도로명주소 고시) 63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4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65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442호(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66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고 제2012-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8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직원채용 기간을 변경하고, ○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민간위탁시 빠른 피드백을 적용하며, 조례 근거 법령 및 운영지침에 맞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주요 내용 ○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관련 근거법령 규정(제1조) ○ 직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센터 직원의 인원 등 변경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제5조) ○ 준용 지침 변경 (제7조, 제10조) -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침 → 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4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구청장이 임용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제2항 변동 시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침”을 “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개정 이유 ○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하여, 발의되는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의 추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단서 규정 중 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4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는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 개정 이유 ○ 관련 법령의 명칭을 수정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관련법령의 제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3조) ○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11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4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용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제12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지방재정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건배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 ☐ 주요 내용 ○ 안건 배부시 단서조항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삭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48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원회 설치 목적 규정(제1조) ○ 사전 심의대상 용역 규정(제4조) -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사업 - 정보기술 관련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 제14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4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기획·연구·설계·분석·타당성조사·시험·감리·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3. “공무원용역참여제”란 기획능력과 실무능력을 충분히 갖춘 공무원이 용역을 맡은 기관·업체의 용역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시는 물론, 필요에 따라 사전 상호 약정된 범위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등) ① 사전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사업
2. 정보기술 관련 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용역발주의 사전검토 등) ①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위원회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연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 용역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늦어도 회의개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①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용역과제 심사 시 심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산편성 등) ① 구청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의 활용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산이 편성된 용역과제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개정 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단,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은 예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5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수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은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제정 이유 ○ 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리며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가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 제2조) ○ 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제4조) ○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7조 ~ 제8조) ○ 마을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제9조 ~ 제18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5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행복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3. “행복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상호간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2.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친환경적이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건강·복지증진 사업
2. 주민의 문화예술·교육사업
3.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
4. 주거환경 및 공공 공간 개선사업
5.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등의 책무)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공모)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 또는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선정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시 심사표 작성은 무기명으로 한다.

제8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구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마을만들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척)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만들기에 관한 심의 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정 이유 ○ 1995년 남구에서 분구 이래 2014년 3월 연수구 탄생 20주년을 맞이하여, 연수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오늘날 연수구의 발전 및 변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역사적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자 연수구사를 편찬하고자 함 ○ 연수구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 주요 내용 ○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제1조,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 (제3조,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 제10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5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이하 “구사” 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2. 구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구사편찬 수행 방식 결정
4. 그 밖에 구사 편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3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회의내용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각 군·구별로 각각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각 군·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창구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명확화(제3조) - 연수구 거주 ⇒ 인천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내국인 ⇒ 내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 재외동포 포함 ○ 지원사업 조정(제4조) - 명예수당 지급액 3만원 ⇒ 8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 ⇒ 30만원(단, 65세 미만 지급 가능) ○ 지급중지 조항 신설(제6조)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환수 조항 수정(제7조) - 수당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근거 및 환수방법 신설(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가능)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5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지급 : 월 8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 30만원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금액(시비)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명예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급방법) ①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명예수당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수당지급일로 한다.

③ 명예수당 및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제1호 중 “타 지역”을 “다른 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에 불응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로금 지급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화번호 :)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u>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u>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참전명예 수당을 받는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화번호 :)									
	신청사유										
	대리수령인 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대 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제1호 ~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1. 주민등록 등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화번호 :)										
	사망일자	년 월 일			사망신고일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규정에 따른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위탁 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의거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하며, ○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근거 규정(제1조)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 (제2조) ○ 센터의 설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제3조~제4조) ○ 센터의 조직 및 센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제11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5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알선과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연수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 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5.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조직 및 직원의 자격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관련 개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원회 기능 추가 -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5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 개정 이유 ○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 여행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여행계획서 제출기한 변경 - 출국 50일 전 ⇒ 출국 15일 전 ○ 여행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 20일 이내 ⇒ 15일 이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498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50일 전까지” 를 “15일 전까지”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일 이내에” 를 “15일 이내에”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건설공사, 설계·감리용역,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기술 분야 계약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확대·실시토록 법제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확대·시행 - 주요정책의 집행 :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3억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 등 - 계약 업무 :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 - 예산 관리 : 예산의 전·이용, 예비비 집행, 출자금 결정 등 - 기타 업무 : 공무 국외여행, 워크숍 등 행사에 관한 사항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3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써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집행업무 등에 대하

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집행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소속 부서를 말한다.

가. 구 본청

나. 구 의회사무기구

다. 구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제3조(대상업무 및 범위) ①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범위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와 같다.

② 계약심사를 거친 업무라는 사유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감사방법) ① 감사방법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한 서면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소속직원에게 대하여 출석 및 진술,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자체감사기구에 전문 기술 인력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대상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일상감사로 의뢰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중점 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사업주체의 적정성
4. 채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5.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6.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7.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9. 그 밖에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결과)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제6조제3항에 따라 일상 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 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제3항에 따른 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의 효과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써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업 무 및 기 준	비 고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 총액기준 3억원 이상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													
계약 업무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계약 (표1)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사</th> <th rowspan="2">용역</th> <th rowspan="2">물품 제조구매</th> </tr> <tr> <th>종합</th> <th>기타</th> </tr> <tr> <td>추정금액(이상)</td> <td>3억원</td> <td>2억원</td> <td>7천만원</td> <td>2천만원</td> </tr> </table>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추정금액(이상)	3억원	2억원	7천만원	2천만원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추정금액(이상)		3억원	2억원	7천만원	2천만원								
○ 표1 기준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등으로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 증액된 계약														
○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 단,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추정금액을 이유로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경우는 제외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표1 기준의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초과하게 된 계약														
예산관리	○ 예산의 이용·전용에 관한 사항(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재해복구사업비 제외)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출연하는 지원금 결정에 관한사항(1억원 이상) ○ 금고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업무	○ 20명 이상 공무 국외 여행을 주관하는 사항 ○ 공무원 참여 등 50명 이상의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 행사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서(기관)장과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일 상 감 사 요 청 서

업무(사업)명				
추진근거 (관련법령)				
업무(사업)개요				
일상감사를 받고자 하는 사항				
첨 부 서 류				
업무담당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부서(기관)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일 상 감 사 의 견 서

관리번호		접수일	
소관부서		처리일	
업무(사업)명			
업무(사업)개요			
감사의견 (조치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 감사관 (인)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관리번호		의견서회시일		
업무(사업)명				
감사의견 (조치요구내용)				
조치한 내용				
미조치사유 (관련법규)				
업무담당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일상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서(기관)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관리번호		소관부서		의견서접수일	
사업(업무)명					
사업(업무) 개요					
감사의견서 요약					
재검토 사유					
관련자료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부서(기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

관리 번호	접수일	처리일	소관부서	업 무 명	감 사 결 과		재검토				조치결과		비고
					통보일	감사의견	접수일	사유	처리결과		접수일	조치내용	
									통보일	검토결과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되었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명칭】 연수 복합상업판매시설 전면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설치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적 5,175.82㎡
 - 체육시설(55㎡), 수변시설(278.69㎡), 광장(704㎡), 도로(358㎡), 녹지(3,780.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주식회사 서부티앤디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12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2. 05.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2. 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성명	비고
1	동춘동	926-1	잡	5,119.40	4,814.12	인천광역시				
2	동춘동	926-3	잡	46.80	46.80	인천교통공사				
3	동춘동	926-14	대	314.90	314.90	(주)하나다울신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지상권 설정	인천광역시	목적:도시철도소유 범위:편입면적 34.5m ² 에 대하여 평균해수면 기준지하 -8.27미터에서 4.53미터까지
계				5,481.10	5,175.8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1. 고 시 일 : 2012. 6. 4.
-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등
-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붙임조서” 참조)
-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	주민의견수렴 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의4에의거 변경절차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지적과 지적도로명팀
(☎032-810-7986 ~ 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조서

순 번	구 분	관 할 행 정 구 역	도로명		도로구간		길 이 (m)	폭 (m)	위 계	기초 간격 (m)	유사 도로명	변경사유
					기점	종점						
1	명칭 변경	송도동	변경전	송도과학로140번길	송도동 241	송도동 264	1,090	34	길	20	송도과학로	기초번호 DB 오류
			변경후	송도과학로130번길	송도동 241	송도동 264	1,090	34	길	20	송도과학로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6. 0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06-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8	건물 분할	2009-07-09	청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6. 0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6. 0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87번길 12-19 외 6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폐지사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87번길 12-19	2012-06-04	건축물 멸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87번길 12-21	2012-06-05	건축물 멸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87번길 12-23	2012-06-06	건축물 멸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인선길 120	2012-06-07	건축물 멸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인선길 122	2012-06-08	건축물 멸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136	2012-06-09	건축물 멸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138	2012-06-10	건축물 멸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

1. 지정취지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청학공원등 13개 연수구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2년 6월 4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청량공원등 13개소

연번	공원명	위 치	면 적(㎡)	비고
	계	13개소	68,800.00	
1	청량	동춘동 923-4	8,583.00	
2	효정	연수동 537-1	5,994.00	
3	풍림	동춘동 929-1	5,137.90	
4	연일	연수동 533-1	5,037.70	
5	함박	연수동 535-3	5,028.50	
6	은행나무	선학동 345	4,452.70	
7	대암	옥련동 582-2	3,307.50	
8	청담	청학동 471	3,027.60	
9	성호	청학동 449-1	2,990.30	
10	샘말	연수동 622	2,625.10	
11	양지	연수동 594-1	10,253.60	
12	동춘	동춘동 938-2	10,000.10	
13	새싹	옥련동 245-1	2,362.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749-8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리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공공지
 - 명 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조성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9,367.10㎡(변경 부분 : 2,13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대표이사 승만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12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동춘동	926-11	잡	8,927.1	8,927.1	인천광역시		
2	동춘동	926-12	도	420.0	420.0	인천광역시		

7.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8.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함은 물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안 제5조 제1항)

- 수탁기관 선정시 검토사항에 있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삭제

나. 민간위탁분야가 점점 확대 운영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해당분야 전문가의 참여기회 증대 (안 제6조 제2항)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7~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중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3항으로 제7항을 제4항으로 제8항을 제5항으로 제9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 행) 1~3 (현 행) 4. (삭 제)
제6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현 행)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7~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부구청장, 사무담당국장,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혹은 위촉한다.	③~⑤ (삭 제)

현행	개정안
⑤ 위원회에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사무의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 위원은 관련 민간위탁사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 제6항과 같음) ④ (현행 제7항과 같음) ⑤ (현행 제8항과 같음) ⑥ (현행 제9항과 같음)